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24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 안철수 · 이성권 · 박덕흠

인요한 · 강대식 · 주호영

최수진 • 이상휘 • 박형수

김성원 · 김태호 · 고동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조"를 "상담·구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종사자 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 |
|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 | ①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 |
|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 | | | |
| 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 | | | |
| 무사를 <u>포함한다</u>)와 구급차등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 |
| 의 응급환자에 대한 <u>구조</u> ・이 | <u>같다상담·구조</u> | | |
| 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 | | | |
| 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 | | | |
| 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 | | | |
| 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 | | | |
| 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 | | | |
| 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 | | | |
| 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 | | |
|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u><신 설></u> |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 | | |
| | 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 | |
| | 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 | |
| |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 | | |
|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 |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 | | |

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 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 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에 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 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 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 한다)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하여 상 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